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제796호(號) 1929년(昭和 4) 8월 26일 월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294호(號)

1927(昭和 2)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68호(號)(일본·만주 국제 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日滿國際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 중(中) 1929(昭和 4)년 9월 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29(昭和 4)년 8월 26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2조(條) 여객운송편도(旅客運送片道)의 부문[部] 1 일본국유철도발착(日本國有鐵道發著)의 경우의 항(項)(다)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를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로 개정(改正)하고, 동(同) 4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항로발착(航路發著)의 경우의 항(項)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4.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항로발착(航路發著)의 경우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및 동지철도회사(東支鐵道會社)
5.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항로발착(航路發著)의 경우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우수리철도(烏蘇里[Ussuri]鐵道) 및 동지철도(東支鐵道)

동조(同條) 여객운송주유(旅客運送周遊) 부문[部]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아래[下]에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를 추가(追加)함.

동조(同條) (주[註]) 중(中) 4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항(項) 중(中) 「및 쓰루가(敦賀)·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 Vladivostok) 간(間)」을 삭제(削除)하고, 동행(同行)의 다음에 「5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쓰루가(敦賀)·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Vladivostok) 간(間)」을 추가(追加)하며, 이하(以下) 순차(順次)대로 내림.

제3조(條)제1항(項) 중(中) 「및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를 「,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및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로 개정(改正)함.

제7조(條) 본문(本文)에 아래[左]의 단서(但書)를 추가(追加)함.

단(但) 일본측(日本側) 구간(區間)과 외국측(外國側) 구간(區間)과의 등급(等級)을 달리함을 득(得)함.

제11조(條)제1항(項)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여객(旅客)은 임의(任意)의 역(驛)에서 도중(途中) 하차(下車)를 할 경우, 당해(當該) 하차역(下車驛) 또는 동일(同一) 경로(徑路)에 있는 전도(前途)의 역(驛)에서 승계(承繼)함을 득(得)함.

동조(同條) 말미(末尾)에 아래[左]의 항(項)을 추가(追加)함.

제1항(項)의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미승차[不乘] 구간(區間)에 대한 운임(運賃)은 이것 환급(還給)을 청구(請求)함을 부득(不得)함.

제12조(條)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아래[下]에 「,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를 추가(追加)함.

제14조(條)제1항(項)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아래[下]에 「또는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를 추가(追加)하고, 「동사(同社)」를 「당해(當該) 기선회사(汽船會社)」로 개정(改正)함.

제21조(條) 발매역소(發賣驛所) 및 경로(徑路) 중(中) 일본국유철도(日本國有鐵道)의 부문[部] 제1 및 제3 경로(徑路),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의 부문[部] 제1경로(徑路) 및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부문[部] 제1 및 제3 경로(徑路)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또는 소련국영상선부[蘇國國營商船部])」를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또는 소련국영상선부[蘇國國營商船部])」로 개정(改正)하고,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오사카상선주식회사 (大阪商船株式會社)	고베(神戶)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	제3	발매소·다롄 간(間)(오사카상선주식회사)—다롄·창춘 간(間)(남만주철도주식회사)—창춘·하얼빈 간(間)(동지철도)—하얼빈·포그라니치나야 간(間)(동지철도)—포그라니치나야·블라디보스토크 간(間)(우수리철도)—블라디보스토크·쓰루가 간(間)(북일본기선주식회사 또는 소련국영상선부)—쓰루가·발매소 간(間)(일본국유철도)	
	다롄(大連)	제4	다롄·모지 간(間)(오사카상선주식회사)—모지·쓰루가 간(間)(일본국유철도)—쓰루가·블라디보스토크 간(間)(북일본기선주식회사 또는 소련국영상선부)—블라디보스토크·포그라니치나야 간(間)(우수리철도)—포그라니치나야·하얼빈 간(間)(동지철도)—하얼빈·창춘 간(間)(동지철도)—창춘·다롄 간(間)(남만주철도주식회사)	
북일본기선주식회사 (北日本汽船株式會社)	쓰루가(敦賀)	제2	쓰루가·블라디보스토크 간(間)(북일본기선주식회사 또는 소련국영상선부)—블라디보스토크·포그라니치나야 간(間)(우수리철도)—포그라니치나야·하얼빈 간(間)(동지철도)—하얼빈·창춘 간(間)(동지철도)—창춘·단둥 간(間)(남만주철도주식회사)—단둥·부산 간(間)(조선총독부철도)—부산·쓰루가 간(間)(일본국유철도)	
		제4	쓰루가·블라디보스토크 간(間)(북일본기선주식회사 또는 소련국영상선부)—블라디보스토크·포르라니치나야 간(間)(우수리리 철도)—포그라니치나야·하얼빈 간(間)(동지철도)—하얼빈·창춘 간(間)(동지철도)—창춘·다롄 간(間)(남만주철도주식회사)—다롄·모지 간(間)(오사카상선주식회사)—모지·쓰루가 간(間)(일본국유철도)	

동조(同條) 발매역소(發賣驛所) 및 경로(徑路) 중(中) 동지철도(東支鐵道)의 부문[部] 제1 및 제3 경로(徑路) 중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또는 소련국영상선부[蘇國國營商船部])」를「(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또는 소련국영상선부[蘇國國營商船部])」로 개정(改正)함.

제22조(條) 주[註]1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다음에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를 추가(追加)함.

제25조(條) 중(中) 「통용기간(通用期間) 내(內)」의 아래[下]에 「또는 그 경과(經過) 후(後) 6개월(箇月) 이내(以內)」를 추가(追加)함.

제26조(條) 중(中) 「통용기간(通用期間) 내(內)」의 아래[下]에 「또는 그 경과(經過) 후(後) 6개월(箇月) 이내(以內)」를 추가(追加)함.

제29조(條)에 아래[下]의 단서(但書)를 추가(追加)함.

단(但) 운수기관(運輸機關)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해야 할 사유(事由)로 인해 운임(運賃)의 환급(還給)을 하는 경우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30조(條)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행(行)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	고베(神戶), 시모노세키(下關), 모지(門司) 및 다롄(大連)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	쓰루가(敦賀)

제31조(條)의2 중(中) 「왕복단체권(往復團體券)」을 「사이드트립 단체권(sidetrip團體券)」으로 개정(改正)함.

동조(同條)에 아래[左]의 주(註)를 추가(追加)함.

(주(註) 사이드트립 단체권(sidetrip團體券)은 아래[左]의 경우에 이것을 발행(發行)함.

1. 분기선(分岐線)을 왕복영행(往復旅行)하는 경우
2. 환상선(環狀線)을 일주(一周)하는 경우
3. 환상선(環狀線)의 일부(一部)가 단체권(團體券)의 경로(徑路)의 일부(一部)가 된 경우 동(同) 경로(徑路)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동(同) 환상선(環狀線)의 다른 부분(部分)을 전부(全部) 편도여행(片道旅行)하는 경우

제31조(條)의3 여객(旅客)은 전조(前條)의 경우에 있어서 원(原) 단체권(團體券)의 경로(徑路) 중(中)에 발생할 수 있는 미승차[不乘] 구간(區間)에 대하여는 운임(運賃)의 환급(還給)을 청구(請求)함을 부득(不得)함.

제31조(條)의4 단체권(團體券)의 경로(徑路) 중(中) 나고야(名古屋)·오사카(大阪) 간(間)을 포함(包含)한 단체권을 소지(所持)한 여객(旅客)은 아래[左]의 경로(徑路)의 하나[1]를 경유(經由)함을 득(得)함.

1. 나고야(名古屋)—마이바라(米原)—오쓰(大津)—다카쓰키(高槻)—오사카(大阪)
   또는 그 반대 경로[反路]
2. 나고야(名古屋)—마이바라(米原)—교토(京都)—나라(奈良)—오사카(大阪)
   또는 그 반대 경로[反路]
3. 나고야(名古屋)—가메야마(龜山)—나라(奈良)—오사카(大阪)
   또는 그 반대 경로[反路]
4. 나고야(名古屋)—가메야마(龜山)—나라(奈良)—오쓰(大津)—교토(京都)—오사카(大阪)
   또는 그 반대 경로[反路]

제33조(條)1 학생단체(學生團體)의 부문[部] 중(中) 「우수리철도선(烏蘇里[Ussuri]鐵道線)」의 행(行) 다음에 「동지철도선(東支鐵道線) 동상(同上)」을, 「오사카상선주식회사항로(大阪商

船株式會社航路)」의 행(行) 다음에 「북일본기선주식회사항로(北日本汽船株式會社航路) 동상(同上)」을 추가(追加)함.

동조(同條)2 보통단체(普通團體)의 부문[部]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항로(大阪商船株式會社航路)」의 행(行)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동지철도(東支鐵道)	1등(等), 2등(等) 및 3등(等)
오사카상선주식회사항로(大阪商船株式會社航路)	동상(同上)
북일본기선주식회사항로(北日本汽船株式會社航路)	동상(同上)

동조(同條)제2항을 삭제(削除)함.

제34조(條)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부문[部]을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오사카상선주식회사 (大阪商船株式會社)	고 베(神戶)—다 롄(大連)	970.3해리 (浬sea mile)	금엔(金圓)	65.00	45.00	19.00	32.50	22.50	9.50
			금불(金弗)	(32.17)	(22.27)	(9.40)	(16.08)	(11.13)	(4.2)
	시모노세키(下關) 모 지(門司) —동(同)	713.0해리 (浬sea mile)	금엔(金圓)	55.00	37.00	17.00	27.50	18.50	8.50
			금불(金弗)	(22.22)	(18.31)	(8.41)	(12.61)	(9.15)	(4.20)
북일본기선주식회사항로 (北日本汽船株式會社航路)	쓰 루 가(敦賀)—블라디보스토크(浦鹽斯德 Vladivostok)	558.9해리 (浬sea mile)	금엔(金圓)	50.00	32.00	13.00	25.00	16.00	6.50
			금불(金弗)	(24.75)	(15.84)	(6.43)	(12.37)	(7.92)	(3.21)

제35조(條) 할인율표(割引率表) 중(中) 운수기관란(運輸機關欄)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를 「오사카상선주식회사 및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로 개정(改正)하고, 동표(同表) 말미(末尾)에 아래[左]와 같이 추가(追加)함.

동지철도(東支鐵道)	1,2등(等)	—	15인 이상 4할(割)	
	3등(等)	5인 이상 5할(割)	30인 이상 4할(割)	

제42조(條) 중(中) 「오사카상선주식회사(大阪商船株式會社)」의 아래[下]에 「, 북일본기선주식회사(北日本汽船株式會社)」를 추가(追加)함.